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성일종 · 강선영 · 유용원
이인선 · 김기현 · 최은석
박수민 · 고동진 · 최수진
김미애 · 추경호 · 김소희
박덕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.

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·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법의 안장대상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·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·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

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(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).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거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
병기·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·개발 과정에서 폭발의
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장대상자에 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1호거목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병기·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·개발 과
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
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
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. 다만,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국립서울현충원, 국립대전현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	1. ----- -----
가. ~ 하. (생 략)	가. ~ 하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거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 직원으로서 병기·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 · 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 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